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36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용연,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경선,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률 규정함(안 제7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1072700000006

미 첨 부 사 유 서 (1 호)

요 청 인 : 황인구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7.27	
회 신 일 : 2021.08.0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에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발생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제6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발생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15,500천원으로 연평균 103,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담당관)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예산(평생교육국)을 참고하여 추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은 처음연도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구축(1회)하고, 교육인력 양성 및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 5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515,500천원(연평균 103,100천원)

- 총 비용 = 교육체계 구축+교육인력 양성+홍보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체계 구축 (제6조제2호)	65,500	-	-	-	-	65,500
	교육인력 양성 (제6조제2호)	60,600	60,600	60,600	60,600	60,600	303,000
	홍보 (제6조제1호)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47,000
	소계(b)	155,500	90,000	90,000	90,000	90,000	515,500
□총 비용(b-a)		155,500	90,000	90,000	90,000	90,000	515,50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 ≒ 65,500천원

-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인권담당관) 참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교육콘텐츠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 교육 인력 양성 ≒ 303,000천원

- 5년간 교육 인력 양성 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교육인력 양성비용 = 60,6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인권담당관) 참고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피해 예방 홍보 ≒ 147,000천원

- 5년간 피해 예방 홍보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피해 예방 홍보비용 = 29,4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평생교육국) 참고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 홍보 및 회의 : 29,4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 석 관 (주 무 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